

유권자의 권리

1. 유권자가 유효 등록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효 등록 유권자란 캘리포니아 주의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이고, 중죄로 수감 또는 가석방 중이 아니며, 현재의 거주지 주소에서 투표하기로 등록한 미국 시민권자를 말합니다.

2. 유권자는 자신의 이름이 유권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잠정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유권자는 투표 마감 시간 전에 투표소에 나와서 줄을 서면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유권자는 협박을 받지 않도록 비밀 투표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전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에 언제든지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잘못 작성한 투표용지를 새 투표용지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투표자도 선거 당일의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잘못 작성한 투표용지를 선거담당관에게 반송하면 새 투표용지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투표할 때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유권자는 작성한 우편 투표용지를 카운티 내의 모든 선거구로 반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유권자는 자신의 선거구에 제작 허가를 받기에 충분한 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9. 유권자는 선거 절차에 관한 질문을 하고 선거 과정을 감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구 관리위원회나 선거 담당관에게 선거 절차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거나 또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담당관을 소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질문으로 인해 선거업무의 집행이 방해 받는 경우에는 위원회나 선거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0. 유권자는 지역 선거담당관이나 총무처장관실에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행동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 공지

- 투표소는 우송된 투표용지 견본에 표시된 날에 오전 7:00부터 오후 8:00까지 개장됩니다.
- 잠정투표를 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투표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선거 관리인으로부터 또는 지역 선거 담당관이 우송한 정보를 읽음으로써 입수할 수 있습니다.
- 새로 등록된 유권자는 연방법에 따라 적절한 신분증이나 다른 신원 확인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권자는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잠정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 연방법 및 주법에 의한 모든 투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 자신을 유자격 유권자라고 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투표기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선거 부정이나 위법 행위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아래의 총무처장관실 비밀 무료전화로 신고하십시오:

유권자 핫라인: 1-866-575-1558

